

7

연구실안전관리비(제22조)

7.1.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및 관리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안전관리비 계상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업종만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제조업 제외) 기업부설연구소도(제조업) 안전관리비 계상을 해야 하나요?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별도의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실안전법을 적용받는 과학기술분야 기업부설연구소는 해당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유지관리비를 계상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계상내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예산 책정 시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안전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안전관련 예산의 배정)에 의거해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대학, 연구기관과 같이 최소 안전관리비 책정 비율(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실안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모든 법 대상기관은 매년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관련 예산을 배정·집행하여야 하므로, 기업부설연구소 또한 최소 안전관리 책정비율과 관계없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집행하여야 합니다.

⚖️ 타 기관 과제 수행시 안전관리 예산 반영 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외의 타 부처 과제 수행 시에도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나요?



연구실안전법 제22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비의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과학기술 분야 연구비 책정 시에는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연구과제 없을 시 예산반영 여부

Q 연구과제 인건비에서만 예산을 반영하면 연구과제가 없을 때는 안전관련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학·연구기관 등은 연구과제 인건비에서 책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비 이외에 연구실안전법 제2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에 따라 매년 소관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고 그 내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과제가 없더라도 기관 운영비 등 기관 자체예산의 일부를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편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연도 계상내역 및 전년도 사용내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예산 관리

Q 안전관리비 예산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나요?

A 별도 계정에 의한 관리여부는 기관의 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단, 1) 대학·연구기관 등은 소관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2)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 시 안전관련 예산을 반드시 편성·집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사례 ○○대학교의 경우 안전관리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본예산(교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과제별 안전관리비(간접비: 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인건비의 2%)를 별도 계정으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Q 연구실안전관리를 실시하는 전담부서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과제에서 계상된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일괄 이관받아서 집행가능한가요?

A 연구과제로부터 계상된 연구실안전관리비는 기관장의 결정 하에 기관차원에서 간접비로 흡수하여 연구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일괄 이관 받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계처리에 관한 것은 일반적인 간접비 처리방식에 따르면 됩니다.

사례 ○○대학교 사례 : 현재 ○○대학교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 주관부서인 산학협력단 연구지원관리실과 협조하여 수행 연구과제별로 총 인건비의 2%(○○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2%로 규정함)를 편성토록 하고 편성된 안전관리비를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사업비”로 재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7.2 연구실안전관리비 사용 용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범위

Q 저희 기관은 매년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이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① 법정 최소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된 전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인건비 ②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수당 ③ 안전학회 참가비 ④ 연구실 실험대 및 캐비닛 ⑤ 안전교육 참여 홍보물 제작

A 연구실안전법 제22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해당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은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그 사용용도는 시행령 제17조 및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8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 교육훈련비, 건강검진비, 안전설비의 설치·유지보수비, 보호장비 구입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비용, 안전관련 회의비 및 출장비 등에 해당 됩니다.

▶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 항목 : ①, ③, ⑤

▶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안 되는 항목 : ②, ④

※ ‘법정 최소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된 전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인건비’란 법 제10조제1항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최소 지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된 자가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전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의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 연구실 실험대 및 캐비닛은 연구를 위한 필수 장비에 해당되므로 연구장비·재료비 등으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전관리비는 시약장, 흡후드, 비상세안기, 생물안전작업대와 같은 안전설비의 설치·유지에 사용

Q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호 및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제3조제4호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항목에 따라 지출 가능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연구실 안전환경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항목은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등을 제외하고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집행하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구실 유해인자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단순 연구장비의 성능향상(열선 등 전기부품, 가스 레귤레이터, 컴퓨터 부품 등 교체), 연구실 안전확보에 관계없는 공간의 설치·재배치(사무공간 파티션, 탕비실 등)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Q 화재감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모니터 구매가 가능한가요?

A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통해 화재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므로 화재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니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화재감지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이 없는 단순 모니터 구매(예. 사무용, 연구용) 등은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받을 수 있사오니 집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전기설비 중 노후화된 분전반 교체가 가능한가요?

A 노후화 등 기타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전기설비로 인해 전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통해 분전반의 교체 및 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연구장비 도입으로 전기 증설 등에 따른 전기공사는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의 시설비용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Q 팔토시, 쿨러 조끼(냉방조끼), 선풍기, 점퍼 등 구매가 가능한가요?

A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는 연구실 유해인자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거나 연구실 안전환경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집행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팔토시, 쿨러 조끼, 선풍기, 점퍼 등은 복리·후생 증진 등 연구자의 편의를 위한 사항으로 연구실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자 보호를 위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과 관계없는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과 관련된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하고자, 연구실 안전관리비 지침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적용·운영 중

Q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생물체로터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공기청정기 구매가 가능한가요?

A 연구실 내 화학물질, 생물체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기청정기는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제3조제4호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가정·사무용으로 미세먼지 등 비점오염원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므로 연구실의 안전환경 개선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화학물질, 생물체 등에 대한 저감성능이 확보된 산업용 공기청화 장치 설치 또는 연구실 유해인자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후드, 배출설비의 설치·개선을 권고드립니다.

Key Point

연구실 안전관리비 세부 집행기준 안내

(※ 항목은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제3조의 각 호 준용)

항목	집행 가능항목	집행 불가항목
1. 보험료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	• 연구실안전법의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	• 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 대학·연구기관에서 법적 준수여부에 관계없이 추가(별도)로 가입하는 상해 보험 등
2.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전파 비용 및 교육·훈련비 등 안전문화 확산 가. 규칙 제10조제2항 등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	•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교육비 •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비용	•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비용(산업안전보건법, 원자력안전법 등) • 자격 시험 응시료
나.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 (정기, 신규채용, 연구내용 변경시)	•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교육비용(집체, 온라인 교육비용)	• 다른 법령에 따른 종사자 법정교육 비용 (산업안전보건법, 원자력안전법 등)
다. 연구실 안전수칙·교육교재·안전 관련 도서·학술지 등 연구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입·제작 비용 및 그 홍보·전파 등의 비용	• 연구실 안전 관련 서적, 교재 구입 비용 • 연구실 안전 관련 교육 콘텐츠 제작 비용 - 동영상 교재 제작비(용역) • 연구실 안전 관련 자료 인쇄 및 책자 발간 비용 • 연구실 안전 관련 홍보(광고, 문자발송 등) 비용 - 사고전파 SMS 비용, 통신비(요금)	• 연구실 안전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영상장비(캠코더, 마이크, 카메라 등) 및 스튜디오 구축 비용 • 안전문자 발송을 위한 통신기기(스마트폰 등) 구매 비용
라. 연구실 안전 관련 행사비 및 포상비	• 연구실 안전 행사 개최 비용(대관, 다대비 등) - 회의장 대관료 • 연구실 안전 포상 비용(상품권, 상품, 상패 등) - 포상비(현금, 상품권 등)	• 매달 지급되는 급여성 포상 비용(안전 인센티브) • 안전담당 직원의 직급 보조비(위험 수당 등)

항목	집행 가능항목	집행 불가항목
3. 건강검진 가. 규칙 제11조에 따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일반·특수건강검진 비용 ※ 건강검진이 아닌, 연구자의 진료, 처치 비용 제외	• 다른 법령에 따른 종사자 법정진단 비용 (산업안전보건법, 원자력안전법 등) • 일반·특수건강검진 항목을 초과하는 종합검진(병원에서 별도로 판매하는 상품) 비용 • 코로나 PCR 검사비, 진단키트 구매, 음성확인서 발급비용 • 진단서, 건강확인서 발급 비용
4.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가.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유지·관리 하기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비용. 다만,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등은 제외	• 연구실안전법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설비,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검지·감지장치, 방호장치 및 그 설치비용 • 가스·누액 감지기, 화재 경보기 등 검·교정 비용	• 연구장비·시설의 성능 유지 및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보수하는 비용 ※ 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중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에 해당하는 항목 • 실험대, 싱크대 등 연구기반시설 구매 비용 • 파라솔,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보수 비용
나. 연구실안전환경을 위한 시설·설비의 재배치에 필요한 비용	• 연구공간과 사무공간 분리를 위한 리모델링 비용 • 연구시설·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보수·이동·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	• 대학·연구기관의 조직 개편 등에 따른 공간 재배치(사무공간 파티션 설치, 쪼개기 등) • 안전확보에 관계 없는 공간 설치(휴게실, 탕비실)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설비 설치·유지 및 보수 항목 사례〉

항목	사례	인정여부
주요 구조부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연구실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재배치 공사	가능
	연구활동종사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계단 난간 설치	가능
	연구공간과의 분리 목적이 아닌, 사무공간 확보·마련을 위한 재배치 공사	불가
	대형 연구장비 설치를 위한 연구실 확장공사	불가
	연구실·사무실 공간분리를 위한 분리 공사	가능
	인화성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의 재질 변경(불연재료) 및 시설 변경(내화구조) 공사	가능
	비상대피표지, 안전정보 안내표시 등 설치 공사	가능

항목	집행 가능항목	집행 불가항목
항목	사례	인정여부
주요 구조부	연구실 적정 온도 확보를 위한 조명공사	가능
	연구실 보안을 위한 지문인식 도어락 설치 또는 출입문 교체	불가
배기·환기설비	연구실 내부에 체류하는 유해인자(가스, 분진 등) 제거를 목적으로 산업용 공기정화기 설치	가능
	노후화된 연구시설에 설치된 배출·공조설비의 성능 저하에 따른 시설 개선	가능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가정용 공기청정기 구입 및 설치	불가
	후드 및 배출시설 제어풍속 확보를 위한 송풍기(Blower) 교체	가능
	노후 샷시(창문) 교체 ※ 적절한 환기는 급기구와 배기구 설치를 통해 실시 가능	불가
	연구실의 자연 환기설비(급기구, 배기구) 설치 공사	가능
가스 설비	배기·환기 설비의 점검비용(연구실로 국한)	가능
	유해인자 검지·경보설비(가스, 누액감지기) 설치·보수(연구실로 국한)	가능
	가스용기(실린더) 고정을 위한 보관대(또는 스트랩) 설치	가능
	가스배관 접합부 확인을 위한 비파괴검사 및 보수비용	가능
	가스용기 보관함 및 배관 설치공사	가능
	가스용기(실린더) 사용을 위한 레귤레이터, MFC 설치	불가능
	가스용기 및 배관의 안전태그(방향 및 종류표시 등) 구매	가능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수시검사 및 사용신고 비용(연구실로 국한)	가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비용(연구실로 국한)	가능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정기·수시검사 비용(연구실로 국한)	가능
전기 설비	전기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온·고전압 장비의 접지공사(연구실로 국한)	가능
	전기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배전반 보수공사(연구실로 국한)	가능
	전기 안전 법령 관련 점검 비용(연구실로 국한)	가능
	연구·실험장비 사용을 위한 멀티탭 구매 비용 ※연구실에서 멀티탭 사용 지양	불가
	연구용 PC 고용량 파워(750W) 부품 교체	불가
소방 설비	연구장비 전기부품 노후화에 따른 부품 교체	불가
	화재감지기 및 경보장치 설치 공사(연구실 한정)	가능
	소화기, 피난안내도 등 소방관련 제품 구매·제작	가능
	소방 안전 법령 관련 점검 비용(연구실로 국한)	가능

항목	집행 가능항목	집행 불가항목
항목	사례	인정여부
긴급세척장비	긴급세척장비 설치 비용	가능
시약장	강제배기 및 필터 장착 시약장 구매 및 점검비용	가능
	시약장 전도방지 조치 비용(앵커 고정 등)	가능
폐기물 저장장비	폐액 보관용기 설치 및 구매 비용	가능
	폐액 보관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	가능
연구·실험장비	실험대 및 선반 설치 및 보수 비용 ※ 실험대, 씽크대 등은 연구기반시설로써 연구비에서 집행	불가
	레이저, 고온, 기계장비별 적정 방호장치 설치 비용	가능
	연구·실험장비 경고표지 부착 비용	가능
	연구장비 부품(압력계, 온도계, 안전밸브 등) 개조·설치 비용 ※ 연구장비 구축시 설계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공정안전 부품으로 연구비에서 집행하여야 함	불가
	글러브 박스, 진공펌프 등 연구장비 유틸리티 유지·보수 비용	불가
취급·관리	방제약품 및 방제장비, 응급조치 장비 구매 비용	가능
	식료품 보관을 위한 냉장고 구매 비용	불가
개인보호구	보안경, 실험복, 화학보호복,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매	가능
	보안경 부착용 시력 보정 도수 렌즈 구매 비용	가능
	해양 연구용 구명조끼 구매 비용	가능
	우비, 방한복 등 계절별 보호복 구매	불가
	사무공간 착용 슬리퍼 구매 비용	불가

5. 보호장비 구입		
가. 연구실험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보호구 구입 비용 - 연구활동 특성에 따른 추가 보호구 구입비용(구명조끼, 납조끼 등) - 화학 흡착제, 소식회, 화학보호복, 공기호흡기 등	- 비규격 실내화(슬리퍼, 크록스 등) 구매 비용 - 우의, 우산, 팔토시, 냉풍조끼(얼음조끼), 방한복, 방진복, 방진화 구매 비용
나. 구급의약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	비상구급약 등 구매 등에 관한 비용	연구활동과 무관한 감염병 치료제(타미플루, 코로나19 치료제), 코로나19 진단키트 구매 비용
다.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 공기호흡기 충전 및 용기 교체비용 - 각종 안전장비 교체비용(내구연한 초과 등)	

항목	집행 가능항목	집행 불가항목
라.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개인용 작업복 구매에 필요한 비용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작업복	연구실 안전 담당자 유니폼 구매 비용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가. 법 제14조에 의한 안전점검의 준비·실시에 필요한 비용 및 점검 측정장비구입 비용	- 안전점검 대행 비용 - 안전점검 장비 구매 비용	
나. 법 제15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필요한 비용 및 진단 측정장비구입 비용	- 정밀안전진단 대행 비용 - 정밀안전진단 장비 구매 비용	
7.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 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지적사항(점검·진단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및 개선대책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비용(연구실안전법 법적 기준 준수 목적) - 유해인자 노출도평가(작업환경측정) 비용	
8.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가. 연구실 안전교육과 관련된 안전 전문가 초빙 시 필요한 강사료와 전문가 활용 및 자문에 필요한 비용	연구실 안전교육 외부 강사 활용 및 자문 비용	
나.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	연구실 사고조사 및 분석 비용(전문가 자문 등)	
9. 수수료		
가. 실험실 지정폐기물 및 실험실 폐수 처리에 따른 연구실 안전을 위한 모든 수수료 및 그에 따라 필요한 비용	실험실 지정폐기물, 폐수 처리 비용 - 위탁, 용역 비용 모두 인정	생활폐기물(폐지, 고철 등) 처리 비용
10. 여비 및 회의비		
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연구실 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출장 등과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 개최 비용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안전관리 활동(세미나, 협의회, 학회 등)을 위한 출장비, 등록비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개최를 위한 다대비, 회의비, 인쇄비, 대관료, 출장비	학회 및 협의회 종신회원비, 연회비 등

항목	집행 가능항목	집행 불가항목
11. 설비 안전검사비 가. 위험기계·기구 및 실험설비의 안전 검사 비용(연구실로 국한)	- 연구실 내 크레인, 압력용기, 사출성형기, 국소배기장치, 산업용 로봇 등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른 인증/검사 수수료 - 연구실 안전보건진단(산업안전보건법) 비용 - 연구실 소방시설 검사·점검·진단 수수료 - 연구실 기계설비(기계설비법) 점검 비용 -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검사 수수료(연구실만 해당) - 기타 연구시설·장비의 법적 점검·진단 비용 - 전기 안전진단 용역비용	-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진단 수수료(연구실 면제대상) - 외부기관에 위탁 안전관리 대행비용 (점검, 진단이 아닌 관리를 목적으로 급여가 포함된 경비)
12.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분석 비용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출장비	- 연구실 사고조사 컨설팅(진단) 비용 - 연구실 사고물질 분석 비용 - 연구실 사고조사 출장비용	
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 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따른 전문가 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	- 전문가 자문 비용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컨설팅 비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비용
1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건비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최소 지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된 자로서 영 제8조 제4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인건비	법정 지정인원 초과 전담 연구실안전 환경관리자 인건비	법정 지정인원인 전담, 겸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인건비
15. 안전관리 시스템 가.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 화학물질·가스 관리시스템 구축·유지 관리 비용 -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유지 관리 비용 -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연구실 안전 담당자의 사무(업무)용 PC,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태블릿, 프로젝터 등 구매 비용

항목	집행 가능항목	집행 불가항목
16.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 된 비용	-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구축·운영·관리 되어야 하는 기타 안전관리 비용 - 연구실 유해인자 누출사고 복구를 위한 청소·소독 비용 - 연구실 안전 교육장 구축비용(건축물, 의자, 각종 장비 등 포함한 비용 일체)	

